

계통연계비 지원사업 FAQ 및 유의사항

Q1. 2025년 계통연계비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① 경기도 소재이며, ② 2024년 사업 개시신고가 완료된, ③ 설비용량이 100kW 이하인 태양광 발전소여야 합니다. (3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예, 2023년 사업개시 신고 완료 → 지원 대상 X, 설비용량 200kW → 지원 대상 X)

Q2. 발전사업 허가증 사본, 사업개시신고수리 공문 등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태양광 발전소 주소지 기준 지자체(시·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서류 발급은 발전소 준공 시 시공업체에게 문의하면 확인 가능)

Q3.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언제 기준이며, 둘다 제출해야 하나요?

A. 모두 **공고일(6월9일) 이후**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4.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

A.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 명의,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Q5. 1명(혹은 1개 법인)의 사업자 명의로 100kW 이하 발전소가 여러개를 신청했는데, 얼마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각 발전소를 합산하여 1명(혹은 1개 법인) 사업자 당 최대 100kW 지원 가능합니다.
(예, 1명(혹은 1개 법인), A발전소 : 80kW, B발전소 : 40kW 신청 → 각 발전소별 설비 용량을 합산하여 100kW까지 지원)

Q6. 설비용량이 사업개시 신고 공문(지자체)과 사용전검사 확인증(한국전기안전공사 발급)이 상이한데, 무엇이 기준인가요?

A. 설비용량 기준은 사용전검사 확인증(한국전기안전공사 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Q7. 신청자격이 '2024년' 사업 개시신고 수리 완료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지자체(시·군)에서 발급한 사업 개시신고 수리 공문의 결재 날짜(②) 기준입니다.
사업 개시일자(①)가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서 발급한 공문 하단의 결재인(혹은 시행일)기준으로 2024년이어야 합니다)

참고 1 설비용량 확인 방법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기(발전)사업 개시신고 수리

1. 귀하께서 신청하신 전기발전사업 개시신고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2. 사업자에게서는 안전관리에 안전을 기하여 주시고,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시 내역

발전소명 (허가번호)	성명	사업장소	발전용량 (kW)	사업개시일
ABC 태양광	홍길동	경기도 00시	99.99	③ 사업 개시일자

끝.

협조자 ③ 사업 개시신고 수리일자
(공문 게재일 또는 시형일)

시형

접수



사용전검사 확인증

발행번호 제 호 고객번호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검사결과	주소	상용 발전설비 (태양광) 380V 99.99(kW)	
	검사전기설비		
	검사연월일		
	검사자 소속	성명	
	판정 합격	다음검사	
임시사용	허용사유:		
	사용기간:		
	사용범위 및 사용방법:		
기타:	-공회 검사대상 이외의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재 점검 후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부지 내 지반침하, 토사유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시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외관상 모듈의 파손이나 지지대의 균열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시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소내전력 380V 3kW 검사 실시함.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검사신청인 귀하			

※ 이 확인증은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발행되었습니다. 확인증 출력일시 :

설비용량은 사업 개시신고 신고 공문(지자체) 상의 발전용량이 아닌, **사용전검사 확인증(한국전기안전공사 발급)**에 기재된 용량이 기준입니다.

참고 2 사업 개시신고 수리 일자 확인 방법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기(발전)사업 개시신고 수리

1. 귀하께서 신청하신 전기발전사업 개시신고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2. 사업자께서는 안전관리에 안전을 기하여 주시고,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시 내역

발전소명 (허가번호)	성명	사업장소	발전용량 (kW)	사업개시일
ABC 태양광	홍길동	경기도 OO시	99.99	㉓ 사업 개시일자

끝.

협조자

㉓ 사업 개시신고 수리일자
(공문 결재일 또는 시행일)

시행

접수

사업 개시신고 수리일은 사업개시일(㉓)이 아닌, 사업 개시신고 수리 결재일(㉔)이 '2024년' 이어야 합니다.